창업동아리 운영 규정

제정 2016. 3. 1. 개정 2018. 2. 28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"본교") 학생의 전공지식을 활용한 창업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창업동아리(이하 "동아리")라 함은 학생들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아이디어, 신상품, 신기술 등을 사업화하여 창업능력의 함양과 수익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단체를 말한다.
- 제3조(회원자격) 동아리 회원은 본 대학의 재학생으로 하며 휴학 및 제적 시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 또한 타 대학 및 기업체 또는 그 연합체의 구성원인 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 대학 동아리 회원으로의 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휴학생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.
 - 1. 동아리 운영위원
 - 2. 동아리 운영 및 행사에 열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자

제4조(등록요건)

- 1. 설립목적은 학칙에 부합되어야 한다.
- 2. 동아리 설립목적 및 연구과제에 대하여 동의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구성한다.
- 3. 동아리는 해당전공 재학생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의 특성상 타전공과도 연합하여 등록할 수 있다. 이때 지도교수는 스쿨과 관계없이 동아리 전공과 관련된 지도교수를 선임할 수 있다.
- 4. 동아리의 인원은 2인 이상 이어야 한다.

제5조(지도교수 선정 및 임원 선출)

- 1. 지도교수는 본 대학 전임, 초빙교원 중에서 선정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2. 지도교수가 사임 또는 기타사유로 궐위 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동아리 등록 신청서를 창업보육센터로 재제출하여야 한다.
- 3. 각 동아리의 책임 지도교수는 1명으로 하되 동아리와 겸임할 수 있다.
- 4. 지도교수는 동아리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모든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.
- 5. 지도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6. 후임 지도교수의 임기는 전임 지도교수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7. 동아리 임원이 선출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명단을 창업보육센터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6조(신규등록) 동아리는 신규등록시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 학기 개강 30일 이내에 창업보육센터로 제출하여야 하며,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기 중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. 다만, 창업동아리의 특성상 수시 등록도 가능하다.

- 1. 동아리 등록 신청서(서식1호)
- 2. 동아리 연간 활동 계획서(서식2호)
- 3. 동아리 회원 명단(서식3호)
- 제7조(재등록) 기존 동아리가 재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6조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.
- 제8조(행사숭인) 동아리 대표자는 행사 7일 전에 행사계획서를 창업보육센터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.
- 제9조(행사) 각 동아리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경진, 기능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 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교내·외 동아리 관련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.
- 제10조(등록취소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장이 본 대학 학생지도위원회 회의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 - 1. 동아리 활동내용이 설립목적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
 - 2. 활동이 학칙을 위반하였거나, 학교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
 - 3. 활동실적이 부진하거나, 학생활동 참여실적이 부진할 경우
 - 4. 불법집회로 인하여 사법적 절차에 계류중인 경우
 - 5. 배정 받은 동아리실과 비품에 대해 파손 및 오손, 구조변경을 한 경우
 - 6. 기타 학교규정을 위반하여 동아리 단체가 징계를 받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심히 손상시켰을 경우
- 제11조(산업체 인사) 동아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련 산업체 인사를 초빙하여 상호 정보교환, 기술지도 및 협의자문을 구할 수 있다.
- 제12조(담당부서) ①창업동아리 운영 관리와 교육에 관한 업무는 창업보육센터에서 담당한다.
 - ②창업보육센터에서는 매학기 창업동아리 현황을 학생담당 부서에 제공한다.
 - ③창업동아리 신규등록, 재등록, 행사계획서 등의 양식은 별도 사업에서 제공한 양식이 없는 한, 본 대학의 일반동아리 규정에 있는 양식을 사용한다.
- 제11조(재정 및 평가) 동아리의 운영경비는 회원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경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평가 기준과 평가위원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12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(서식1호)

동아리 등록 신청서

				결	담 당	팀 장	처 장	
구분 :	일반 (), 전공(<i>선</i> 년	₹)		 재			
동아리명	국문		구	신규	등록 <i>선택</i>	/ - 창립연도		
	영문			분	재 등	- 록 <i>선틱</i>	7 6 H U工	
회원수		명 (남)(여)					
동아리 소 활동도								
구분 직책		성 명	스쿨(전공)	학년	년 학 번 전화번호(휴		(휴대폰)	
회	장							
부 회 장								
총	무							
지도교	コム	소속 스		성 명		전 화 번 호		
ハエル	r- F							

우리 대학 일반/전공 동아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동아리 신규/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 .

회 장	스쿨(전공) :	
	성 명 :	(인)
1 1	. 7 () 7 (
지도교수	스쿨(전공) :	
	성 명 :	(인)

(담당 부서장) 귀하

※ 첨부서류 1. 동아리 연간 활동 계획서 1부(서식2호), 2. 동아리 회원 명단 1부(서식3호)

(서식 2호)

동아리 연간 활동 계획서

(2 . . 현재)

구분	활동 계획(내용, 해당 기관 및 단체 등)	비고
4월		
5월		
6월		
7월		
8월		
9월		
10월		
11월		
12월		
1월		
2월		
3월		

(서식 3호)

동아리회원 명단

(20 . . 현재)

				I			
연번	성 명	스쿨(전공)	학년	학번	연락처	서 명	비고
1							회장
2							부회장
3							총무
4							기타(휴학등)
5							
6							
7							
8							
9							
10							
11							
12							
13							
14							
15							
16							
17							
18							
19							
20							
21							
22							
23							
24							
25							
계	명	남() 여	()				